

경남도립남해대학 전과제도 운영 지침

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과 간 편제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과제도 운영 지침입니다. [대학종합발전계획 관리코드 : 1-3-A-나]

1 | 관련근거

- 「경남도립남해대학 종합발전계획(NVP2030)」의 학과 운영 체계의 탄력성 제고의 학과 간 편제정원의 탄력적 운영의 전과제도 확대 운영
- 「경남도립남해대학 학칙」 제19조(전과)

2 | 신청자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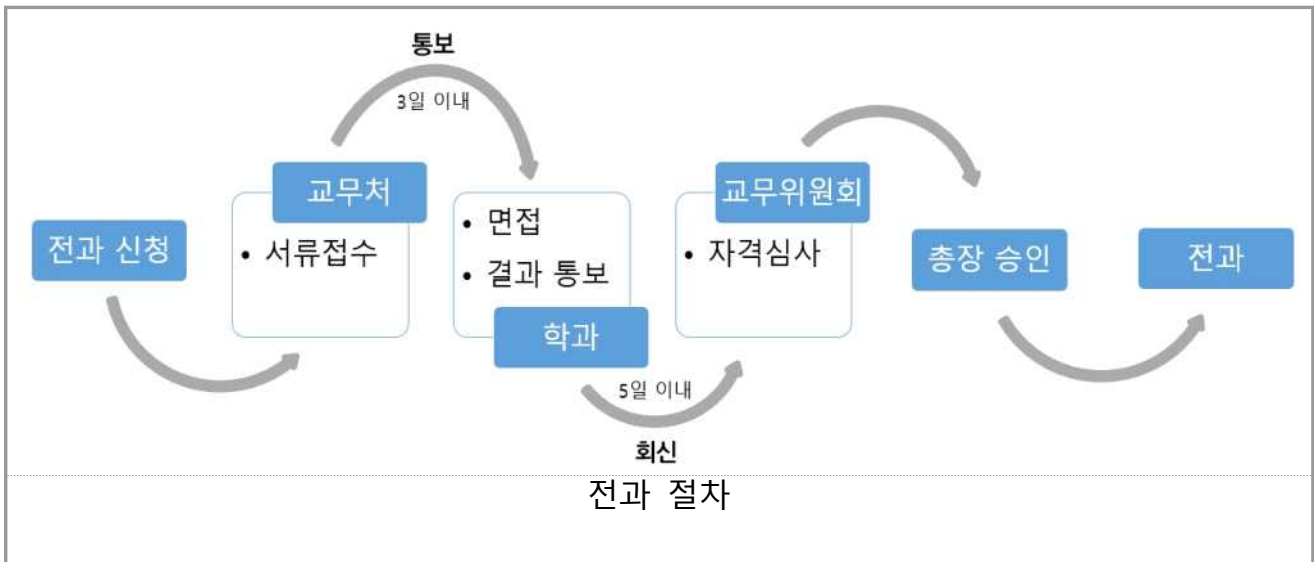
- 대 상 : 1학년 2학기 재학생, 2학년 1학기 재학생(복학예정자 포함)
※ 구조개혁에 따른 전과는 학칙 제19조의 제한을 받지 않음
- 신청시기 : 해당 학기 전과 계획에 따름
- 인 원 : 해당학과 입학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

3 | 제한사항

-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용
- 전과 후의 교과목 이수능력은 전입학과의 교과이수원칙에 따라야 하며, 기 취득합점은 인정

4 | 처리절차

- 신청서류
 - 전과신청서 1부([별지 1])
 - 학업계획서 1부
- 전 형 : 전과 대상학과 교수 면접(학과장 포함 2인 이상([별지 2])) 결과에 따름
- 교무처는 신청접수 3일 이내에 전과 대상학과에 통보하여야 하며, 해당학과는 5일 이내에 면접전형을 거쳐 수용여부를 교무처에 회신하여야 함 (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전형도 없이 수용을 거부할 수 없음)
- 교무처는 자격심사 및 학과의 면접평가를 종합하여 총장에게 승인 (교무위원회 심의)요청을 하여야 함



5 | 유의사항

- 모집단위간의 관련성 및 교과목 이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전과
- 전과가 확정된 후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 후 휴학 가능
- 전과 허가를 받은 학생이 전과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전입학과의 학과장 면담을 거친 후

교무처에 소정의 포기원([별지3])을 제출하여야 함. 이 경우 다시
전과 신청 할 수 없음

- 붙임 1. 전과신청서 1부.
2. 전과 면접평가표 1부.
3. 전과포기원 1부. 끝.

[별지 2]

전 과 면 접 평 가 표

학 번		이 름	
현 재 소속 학과		전 과 희망 학과	

평가항목	평 가 요 소	평 가 점 수			
전과 동기 (30점)	전과 동기의 명확성 및 적절성 (현 전공 부적응 사유, 학업 충실도 등 검증)	30	20	10	0
학업성취 가능성 (40점)	전과 희망학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(적성 및 졸업 후 직업전망에 대한 이해도 검증)	40	30	10	0
진로계획 (30점)	목표(학업, 직업)설정, 장래희망의 일치성	30	20	10	0
가 점 (최대 5점)	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, 군대생활 등을 통해 전 공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				
합계(100점)	/ 100				
면접위원 의 견					
면접위원		(서명 또는 인)			

※ <전과 수용>을 위한 평점 기준(하한선)은 각 학과에서 사전에 확정하여 교무처에 보고하고,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런 과정이 생략된 경우는 70점으로 함

[별지 3]

전 과 포 기 원

- 학 과 명 :
- 학 번 :
- 포기사유 :

위와 같은 사유로 전과를 포기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학과장 : (서명 또는 인)